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종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윤종균 · 진성준 · 김태년
서영석 · 맹성규 · 박성준
강준현 · 남인순 · 한민수
한준호 · 김병주 · 부승찬
전용기 · 김태선 · 이기현
이재정 · 서미화 · 신정훈
이용우 · 복기왕 · 김우영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,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,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

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, 실행의 중지,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).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즉시”를 “그 사실을 계약의 체결 등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최대주주의 변경(모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다)
 2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개시
 3.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
 4. 그 밖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제9조의 면허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제28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, 실행의 중지,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

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.

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
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
포함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운수사업 면허 관련 고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전에 안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) ① ~ ③ (생략)	제8조(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, <u>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</u>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<u>그 사실을 계약의 체결 등으로 안</u> <u>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.
<신 설>	1. <u>최대주주의 변경(모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다)</u>
<신 설>	2. 「 <u>기업구조조정 촉진법</u> 」에 따른 <u>공동관리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개시</u>
<신 설>	3. <u>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최대주주</u>

<신 설>

<신 설>

제84조(과태료) ① 제27조제6호
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
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
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
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
포함한다)에게는 2천만원 이하
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
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
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
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권
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

4. 그 밖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
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
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사항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제1
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
통지를 받으면 제9조의 면허의
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제28
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
정지, 실행의 중지, 의결권 행
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
매각을 명할 수 있다.

제8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부과한다.

1. 제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
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
아니한 자

2.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
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

② ~ ④ (생략)	<u>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)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